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이 콘텐츠에서는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불법금융광고, 음란물 유포,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 등의 불법행위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살이나 도박 사이트의 신고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상담기관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잘 알고 대응한다면 건전한 인터넷 사용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1
1. 불법금융광고 규제 4
1.1.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4
1.1.1. 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규제 4
1.1.2.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신고 등 7
2. 음란물 유포금지 10
2.1.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10
2.1.1.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10
2.1.2.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13
3. 불법사이트 등 규제 17
3.1.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17
3.1.1.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17
3.1.2.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의 개설 금지 18
3.1.3.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20
3.2.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23
3.2.1.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23
3.2.2.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 시 신고 25

1. 불법금융광고 규제

1.1.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1.1.1. 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규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유형 및 처벌기준

통장매매(대포통장) 광고 및 처벌기준

▪ 인터넷에서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이하 “각종 통장 등”이라 함)을 1건당 80 ~ 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장매매광고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 각종 통장 등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를 매매하도록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5호).

>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음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
>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 ·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
>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 · 이용자의 생체정보
>
> · 전자식 카드,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등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처벌기준

▸ 각종 통장 등을 매매하도록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4호).

작업대출 광고 및 처벌기준

▪ 흔히 볼 수 있는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의 광고 글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변조하여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 광고입니다(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참조).

> ※ **작업대출의 유형**
>
> ·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자금대출을 받아주겠다’ 식의 전세·사업자금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위·변조
>
> · ‘소득증명, 급여이체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식의 고액 작업대출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의 위·변조
>
> · ‘보증인을 넣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식의 보증부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대출 : 대출자와 실제 연관 없는 보증인을

세워 관련 서류 등의 위·변조

·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전산 작업비용이 필요하다' 식의 무직자·저신용자를 위한 작업대출 : 재직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의 위·변조

▪ 처벌기준

▹ 대출희망자의 서류 중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변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참조). ※ 사업자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25조 참조).

미인가,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광고

▪ 인터넷에서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 '급전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저신용자, 대학생 등과 같은 대출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미인가, 미등록 대부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는 원칙적으로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므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 대부업체 등록현황은 각 시·도의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소비자보호-서민금융 1332-금융회사조회-등록대부업체-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처벌기준

▹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 등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상호도용을 통한 광고

▪ 인터넷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면 유명하고 큰 은행 등의 금융회사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입니다.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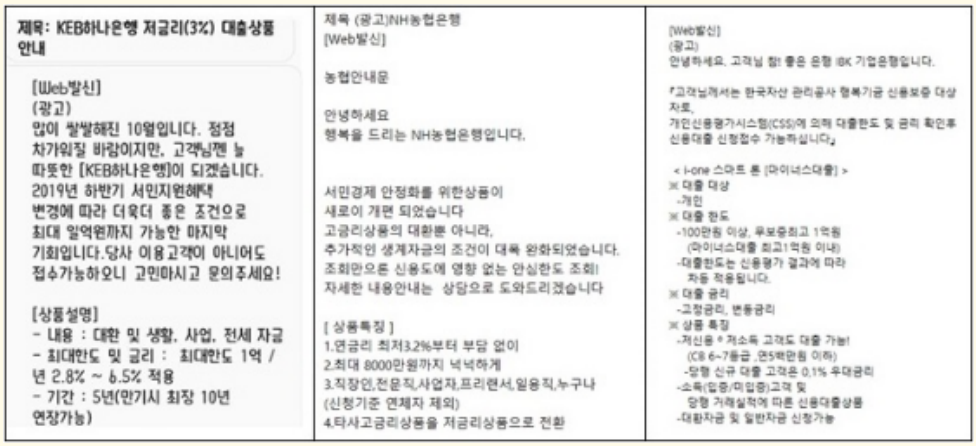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함)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함)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 등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에 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 상호도용을 통한 불법금융광고의 예시 >



<출처: 금융감독원 2020. 1. 14. 자 보도자료,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확 줄어든다´>

▪ 처벌기준

▹ 부당하게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에게 하도록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수수료가 최대 50% 정도로 매우 높고 추후 소액결제금액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 불리한 거래이므로 과도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의 예시 >



<출처 : 금융감독원 2014. 1. 28. 자 보도자료, ´신용카드깡 및 휴대폰깡 혐의업자 105개사 적발´>

▪ “신용카드 현금화”는 인터넷사이트, 카페, 블로그 등에 ‘신용카드 현금화 해 드립니다’, ‘카드깡 됩니다’라는 광고로 유인하여 카드 결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카드 현금화도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와 같이 수수료가 높고 추후 변제금액이 많아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의 예시 >



<출처 : 금융감독원 2020. 6. 16. 자 보도자료,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처벌기준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나목).

1.1.2.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신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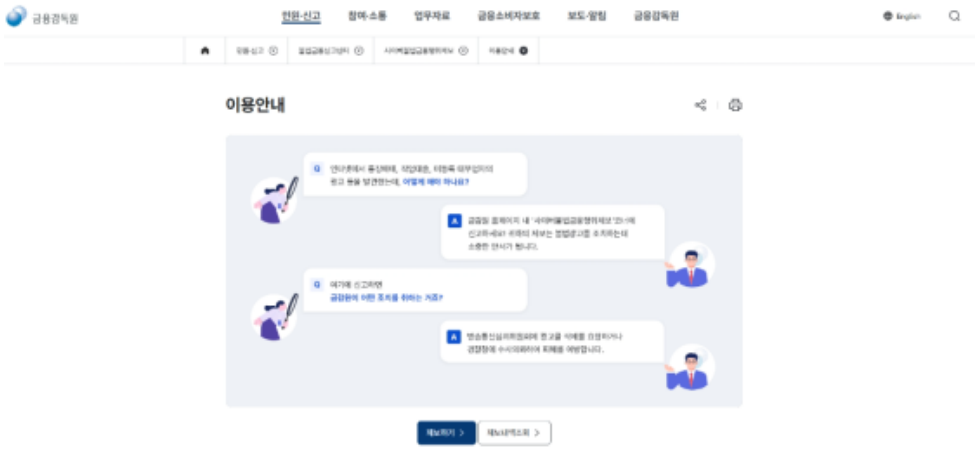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의 피해신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

▪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피해신고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하면 됩니다.

▪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사이트 화면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경찰에 신고

▪ 불법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긴급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고, 사이버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 사건처리절차 >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 사건처리 절차>

※ 그 밖에 불법금융광고 대응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소비자보호-서민금융 1332-불법금융대응-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요령-대출사기-피해예방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음란물 유포금지

2.1.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2.1.1.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음란이란?

음란의 개념

▪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의 판단 기준

▪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

포르노그래피의 유포

▪ "포르노그래피"란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 포르노그래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되어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 처벌기준

▹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사람의 신체 촬영물 유포

▪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해당 여부**
>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 처벌기준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2. 위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3.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위에 따른 반포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5. 위 1. 또는 2. , 3.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6. 상습으로 위 1. 부터 4. 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5항).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

▪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1.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등”이라 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2. 위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3.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2, 3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5. 위 1, 2, 3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6. 상습으로 위 1, 2, 3, 4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5항).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에 대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 위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 상습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3항).

성적수치심 유발 글, 사진 등의 유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처벌기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1. 성교 행위

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4. 자위 행위

▪ 처벌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판단**
>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소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 **Q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
> A1) 네, 해당합니다.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은 순간에 소지죄는 성립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판결 참조).
>
> **Q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
>
> A2) 아닙니다. “재밌는 자료”또는 “좋은 자료”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삭제했다면 이는 소지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
> **Q3)**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호기심에 시청한 것 만으로도 처벌받나요?
>
> A3) 네, 호기심에 시청한 경우라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 <출처 : 경찰청 2012. 10. 자 보도자료,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설명자료" 참조>

2.1.2. 음란물 유포에 대한 신고 및 대응

음란물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음란물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온라인 신고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report.kocsc.or.kr), 민원신청-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377 번입니다.

경찰에 신고

▪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 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음란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삭제 요청

▪ 인터넷에 자신에 관한 음란물이 유포되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전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게시판에 이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 본문).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불법정보의 신고 후 상담을 통해 심의가 가능한 사안일 경우 관계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처리흐름도 >

통신민원처리 흐름도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report.kocsc.or.kr), 이용안내-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안내>

※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대한 심의

Q)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이 심의가 가능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report.kocsc.or.kr), 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불법유해정보>

음란물 중독 예방 및 치료

전문상담기관의 상담 및 치료

▪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중독되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중독상담 및 예방교육 상담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및 예방교육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스마트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www.iapc.or.kr)>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상담(☎ 1599-0075)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음란물에 대비한 청소년 보호조치

· 음란물 및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불법사이트 등 규제

3.1.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3.1.1.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 금지

인터넷 도박이란?

▪ “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 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형법」 제247조).

> ※ **"영리의 목적" 판단기준**
>
> ·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닙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7조).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형법」 제246조제1항).

▪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246조제2항).

> ※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판례**
>
> ·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참가자가 적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여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것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참가자들의 대회 참여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
> ·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자살 사이트 개설에 대한 처벌

▪ 자살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인만큼 국가 차원에서 예방과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제13조)

▪ 처벌기준

▹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살하도록 조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 등은 「형법」상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

> **※ 자살 사이트 관련 판례**
>
> ·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
> ·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3.1.2. 불법 복제물 및 폭발물 관련 사이트의 개설 금지

불법 복제물의 유통 금지

저작권 침해 및 복제물 유통에 대한 처벌

▪ 인터넷에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파일 등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다음의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봅니다(「저작권법」 제124조제1항).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수입물건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수입물건 포함)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4.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을 운영하는 영리목적의 행위
5.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에게 제공하는 목적으로 해당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4.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영리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형사 처벌기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3항제4호).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그 밖의 조치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가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접속차단(삭제 또는 전송 중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제3호 참조).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불법복제물등의 긴급차단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되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4제1항).

총포·폭발물 제조 사이트의 개설 금지

총포 및 폭발물이란?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 포함)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7254판결).

총포 및 폭발물 제조방법 유포에 대한 처벌기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72조제3호).

▪ 총포·화약류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형법」 제120조제1항 본문).

폭발물 등을 실제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처벌기준

▪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19조제1항).

▪ 폭발물을 사용하도록 선동한 사람은 폭발물 예비·음모 및 선동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20조).

>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
> Q)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
> A)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
>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

3.1.3.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불법·유해정보신고)에 신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유해정보신고를 운영하여 인터넷 도박, 자살, 폭발물, 불법 복제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 및 심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와 같이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report.kocsc.or.kr), 민원신청-통신민원-불법·유해정보신고> 또는 상담전화(☎ 137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영화·방송프로그램·웹툰·음원 등 저작권 침해정보 사이트 신고**
>
> Q) 영화, 방송프로그램, 웹툰, 음원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를 심의 신청하거나 신고하고 싶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나요?
>
>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해당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 접속차단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온라인 불법복제물과 관련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복제물 삭제 및 전송중단, 반복전송자의 계정 정지와 같이 국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복제물 신고 등 보다 자세한 도움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 copy112.or.kr / 1588-0190

<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https://report.kocsc.or.kr), 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불법유해정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신고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유발·유해정보 확산 방지와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유발·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자살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하여 인터넷상의 자살유발·유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또는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홈페이지(https://portal.kcopa.or.kr/)> 또는 상담전화(☎ 1588-0190)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물 신고절차 >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 홈페이지(https://portal.kcopa.or.kr/),
불법복제물신고-신고처리절차>

경찰에 신고

▪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을 발견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박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센터 연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재정적·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지인이 인터넷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www.kcgp.or.kr) 또는 상담전화(☎ 1336)를 통해 상담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치유·재활 프로그램 >



<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https://www.kcgp.or.kr), 치유재활-치유재활프로그램-프로그램 안내>

3.2.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3.2.1.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행위에 대한 규제

해킹 행위의 금지

해킹이란?

▪ “해킹”이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참조).

▪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함) 중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합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해킹에 대한 처벌기준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

▪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

악성프로그램의 유포 금지

악성프로그램이란?

▪ "악성프로그램"이란 악의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흔히 웜, 바이러스 또는 악성코드 등으로 불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참조).

▪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논리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

스팸메일 발송 금지

스팸메일이란?

▪ "스팸메일(spam mail)"이란 통상 ① 수신자가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③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즉 원치 않는 상업적 전자메일을 말합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참고].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경우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스팸메일 전송에 대한 처벌기준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7호).

※ 그 밖에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전자금융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 시 신고

인터넷 보안피해 발생에 대한 신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여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보호나라 홈페이지(www.krcert.or.kr), 침해사고 신고-신고하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18 번입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스팸메일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스팸메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상 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불법스팸-스팸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고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동일하게 국번없이 ☎ 118 번입니다.

< 스팸신고 처리절차 >



<출처: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불법스팸-스팸신고 처리절차 안내>

경찰에 신고

- 인터넷 보안피해를 당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악성프로그램 및 스팸메일 등의 예방법

악성프로그램 예방법

-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음란물 등 불법컨텐츠 검색을 자제하고, 기타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2. 항상 백신프로그램으로 검사하며, 백신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다.
3. 다양한 감염경로를 막기 위해 백신과 방화벽을 동시에 사용한다.
4.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복사하지 않으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 한다.
5.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프로그램도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도록 한다.
6. 중요한 데이터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http://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범죄 예방홍보물-예방수칙>

스팸메일 예방법

▪ 스팸메일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1. 불필요하게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다.
2. 이동통신사 또는 이메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차단 기능을 활용한다.
3. 불필요한 광고메일,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는다.
4. 광고메일은 열어보거나 응답하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5. 스팸 메시지에 포함된 URL은 접속하지 않는다.
6. 미성년자는 포탈의 청소년 계정을 이용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http://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범죄 예방홍보물-예방수칙>